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직부대 등 연도별 대령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변경된 직무연수부장 직위를 반영하고, 참모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외협력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편제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편제변경에 따라 현행 영관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던 직무연수부장 직위를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나. 국방대학교 하위조직으로 대외협력실 명시(안 제6조제1항제1호)

국방대학교는 '11년부터 하위조직으로 대외협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는 대외협력실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관급장교”를 “3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하되, 교수로 보하는”을 “임명하되, 교수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외협력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부·기획조정실·행정지원부”를 “교수부·기획조정실·행정지원부·대외협력실”로 한다.

4. 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과 국방외교, 학교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또는”을 “공무원, 군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직원”을 각각 “교직원”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 (생략)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u>보한다</u> .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임명한다</u> .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 (생략)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u>보한다</u> .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임명한다</u> .
제5조(직무연수부) ① (생략) ②직무연수부장은 <u>영관급장교</u>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이 <u>보하되, 교수로 보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	제5조(직무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3급 이상 군무원</u> ----- <u>임명하되, 교수로 임명하는</u> ----- -----.
제6조(교수부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제6조(교수부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교수부 · 기획조정실 · 행정지원부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 · 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5. (생 략)

제9조(입학자격) ① 안전보장대학원 ·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

4. 대외협력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과 국방외교, 학교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교수부 · 기획조정실 · 행정지원부 · 대외협력실 -----

-----.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
----- “그 밖에 -----

----- 어느 하나에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입학자격) ① -----

----- 어느 하나에 -----

다.

1. (생략)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3. (생략)

② 삭제

③·④ (생략)

제11조(총장 등)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② (생략)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
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
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생략)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제15조(도서관) ①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

--.

1. (현행과 같음)

2. ----- 공무원, 군무원 또
는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총장 등) ①-----
----- 교직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직원-----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수등의 자격) -----

----- 어느 하나
에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관) ①-----

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 장이 <u>보한다</u>. ② ~ ④ (생 략)	----- --- <u>임명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245